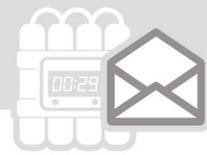


우편물테러 식별 및 대응요령

2019. 1



테러정보통합센터
TERRORISM INFORMATION INTEGRATION CENTER



I. 일반적인 의심우편물 식별 요령

- 우편물 겉면의 기재내용이 부실한 경우
 - ▶ 수취인 주소·성명이 불분명, 직책만 기재, 발송인 주소 누락 등
- 수취인이 주요 기관 또는 주요 인사로 되어 있는 경우
- 겉면에 '친전', '본인개봉 요망' 등이 표시된 경우
- 우표를 과도하게 붙였거나, 테이프를 불필요하게 많이 붙인 경우
- 외국으로부터 온 예기치 못한 우편물
 - ▶ 2017.3.15 독일 재무장관 앞으로 발송된 소포폭탄의 경우, 소포 발송자를 그리스 정치인·학술기구로 위장, 검색요원들의 경계 이완을 유도



절대 만지지 말고

발견 즉시 격리 보관하고

열거나 냄새·맛을 보지 말고

신고 111(국정원)
112(경찰)

* 해외의 경우 주재국 경찰 등





II. 유형별 식별요령

1. 사제폭발물

가. 작동원리 : 우편물 개봉시 내장된 폭발물이 자동 폭발되도록 설계

나. 사제폭발물 구성요소

폭약 Explosives	화약류	흑색화약(black powder), 무연화약 등
	군·산업용폭약	TNT, 콤포지션(C-3, C-4), 에멀전폭약, 다이너마이트 등
	사제폭약	백색화약(white powder), PLX 액체폭약, TATP 등
기폭장치 Initiating Equipment	뇌관	전기식·비전기식 뇌관, 꼬마전구 뇌관 등
	전원	알카라인(AA)·수은 배터리 등
	점화장치	버튼형 스위치, 수은 스위치 등
용기 Container	금속	파이프, 텀블러 등
	플라스틱	공구가방, 여행용가방 등
	기타	소포, 택배, 편지봉투, 유리병 등

* 폭발물 종류에 따라 기폭장치가 필요없는 폭약을 이용하는 등 구성요소가 다를 수 있음

다. 식별요령

- 테이프나 끈으로 과도하게 포장되거나 밀폐시킨 우편물
 - ▶ 외부 충격으로 폭발물이 손상되거나 오폭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다포장
- 전선줄·안테나 등이 우편물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
 - ▶ 외부에서 리모컨 등을 통해 원격 점화시킬 경우, 신호를 받게 노출
- 중앙부분이 유난히 두껍고 딱딱하거나, 포장이 밖으로 나온 우편물
-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거나, 한쪽으로 기울어진 우편물
- 가장자리가 찌그러졌거나 표면이 울퉁불퉁한 우편물
- 아세톤, 과산화수소 등 화학물질 냄새가 나는 우편물



라. 주요 사례

- 1) 2018.10 미국 뉴욕주 「클린턴」· 워싱턴 DC 「오바마」 前대통령 자택에 폭발물 소포가 각각 배송, 우편물 검색 과정에서 적발
- 2) 2018.10 미국 플로리다주 「슐츠」 하원의원 · 캘리포니아주 「해리스」 상원의원 사무실 소재 건물에 폭발물 소포 배달
- 3) 2018.3~4 미국 텍사스주 택배업체(페덱스) 배송센터 · 기부물품 가게 등에서 6차례 택배 우편물 폭발사고 발생(2명 사망)
- 4) 2017.3 프랑스 파리 IMF 지부로 배달된 우편물 폭탄이 폭발하여 1명 부상(그리스 극좌 무정부주의 단체 ‘불의 음모단’ 소행 추정)
- 5) 2017.3 그리스 아테네의 수화물 분류센터에서 유럽 각국의 EU 재무관리 · 기업 등 배송 우편물에서 폭탄(8개)이 발견되어 해체
- 6) 2016.6 멕시코 오악사카주 산후안투스테펙시 시장실에 배달된 소포를 개봉하는 과정에서 폭탄 폭발
- 7) 2015.9 중국 류저우시에서 「웨이인융」(33세, 사망)이 가져다 놓은 소포폭탄으로 18차례 연쇄 폭발, 10명 사망 · 51명 부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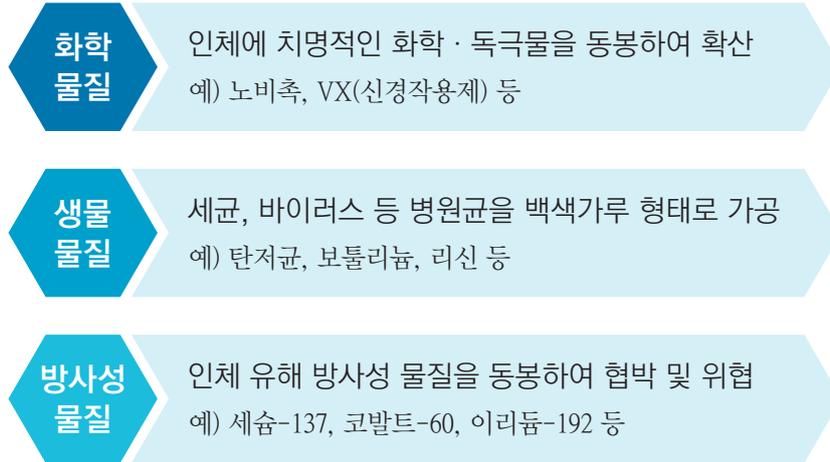
〈 전형적인 형태의 소포폭탄 〉



2. 화생방물질

가. 작동원리 : 우편물에 유독성 화학물질 · 탄저균(백색가루) · 독극물 · 방사성물질 등을 은닉, 개봉시 자동 살포

나. 주요 화생방 물질의 형태



다. 식별요령

- 겉면에 분말 · 결정체 · 파우더 등이 묻어있는 우편물
- 포장이 변색되어 있거나 얼룩이 있는 우편물
- 말랑말랑하여 가루가 들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우편물
- 비닐 · 방수포 등으로 이중 포장되어 있는 우편물
- 특이한 냄새가 나거나, 눈 · 목 등이 따가운 우편물
- 유리병 · 캔 등 유독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가 동봉된 우편물
- 만졌을 때 이상 열기가 감지되는 우편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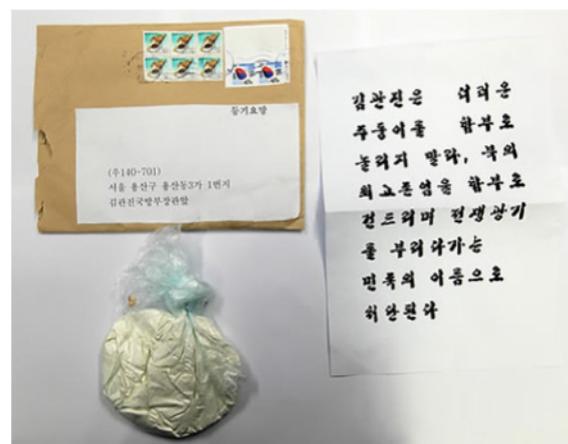


라. 주요 사례

- 1) 2019.1 호주 멜버른 주재 우리나라 및 美·英·日 등 영사관(29개소)에 정체불명의 의심소포 배달(조사결과 석면가루로 확인)
- 2) 2018.10 美 「트럼프」 대통령 · 「매티스」 국방장관 · 「리처드슨」 해군참모총장 앞으로 배달된 우편물에서 독극물 ‘리신’ 적발
- 3) 2018.2 러시아 모스크바 주재 미국, 프랑스, 캐나다, EU, 폴란드 등 대사관(11개)에 백색가루 함유 편지 배송(살충제 피프로닐 검출)
- 4) 2013.4~5 美 「오바마」 대통령 · 「블룸버그」 뉴욕시장 · 「로저 위커」 상원위원 · 「홀랜드」 판사 수신편지에서 독극물 ‘리신’ 적발
- 5) 2013.4 국방부 장관 앞으로 백색가루가 동봉된 소포 배달(조사 결과 밀가루로 확인)
- 6) 2008.12 우리나라 · 영국 · 독일 등 18개국 美 대사관에 백색 분말가루가 들어있는 편지 배달(조사결과 무해한 물질로 확인)
- 7) 2001.9 美 「대술」 상원의원, 「브로코」 NBC 앵커, 「스티븐슨」 기자 앞으로 탄저균 백색가루 편지가 배달, 5명 사망(17명 감염)
 - ▶ 2008.8 FBI는 범인이 美軍 생화학연구소 「이빈스」(2008.7 자살) 연구원 이라고 발표



〈 2001년 탄저균 테러에 이용된 편지 〉



〈 국방부 장관 앞 배달 편지 〉



Ⅲ. 대응 요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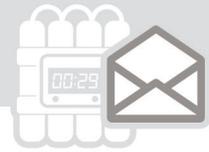
1. 의심우편물 발견시

절대로 개봉하거나 옮기지 말고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않는다

- 던지거나 흔드는 등 충격을 주지 않는다.
- 냄새를 맡거나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다.
- 라이터 등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.
- 외부로 노출된 얇은 줄이나 전선을 잡아당기거나 자르지 않는다.
- 휴대폰 · 리모컨 등 전자파 발생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.
 - ▶ 원격 점화되도록 제작된 폭발물이 오폭할 가능성에 대비
- 의심우편물 주변의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현장을 통제한다.
- 우편물 접수 · 검색장소에 방폭담요 등을 비치하고 폭발물 의심 물체가 발견되면 방폭담요로 덮어둔 후 전문기관에 신고한다.
 - ▶ 정교하게 제작 · 은닉된 폭발물은 엑스레이 검색만으로는 식별이 어려우므로 폭발물 대응팀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처리



〈 방폭담요(左) 및 사용법(右) 〉



2. 의심우편물 개봉시

실수로 우편물을 개봉한 경우, 침착하게 다음의 행동을 취한다

[사제폭발물 동봉 우편물]

- 개봉장소를 즉시 떠나 직원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.
- 기관장 · 상급관서 보고 및 경찰 등 유관기관에 신고한다.

[화생방물질 은닉 우편물]

- 더 이상 접촉하지 말고 손수건으로 코 · 입을 막는다.
- 휴지통 · 박스 등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뚜껑을 닫는다.
 - ▶ 임시방편으로 입고 있던 옷이나 담요 등을 덮어 확산을 지연
- 창문을 닫고 현장을 밀폐시킨 후 우편물 개봉장소를 즉시 떠난다.
- 이후, 기관장 · 상급관서 보고 및 경찰 등 유관기관에 신고한다.
- 화생방 물질이 묻었을 경우, 신속히 옷 · 장갑 · 안경 등을 벗고 흐르는 물에 씻는다. 물품들은 비닐백에 담아 보관한다.
- 오염 확산방지를 위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한다.

[총기 · 도검류 동봉 우편물]

- 발송인 추적을 위해 만지지 말고 원상태로 보존한다.
- 기관장 · 상급관서 보고 및 경찰 등 유관기관에 신고한다.



〈 황장엽씨 앞 협박 소포 〉



IV. 우편물 반입시 유의사항

- 소포 · 우편물은 경비담당자 · 보안책임자 등이 일괄 접수하여 의심물질 동봉여부를 육안 · 검사장비 등을 활용하여 점검 후 반입한다.
- 의심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직접 개봉하지 말고 경찰 등에 신고하여 전문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한다.
- 부피가 큰 대형 우편물 · 소포 · 외부반입 물품 등은 건물 외부에서 개봉하여 내용물 확인 후 반입한다.
- 개인 물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경비담당자 · 보안책임자가 수령인을 동반한 상태에서 개봉하고, 내용물 확인 후 반입한다.



 **POLICE** | 해외의 경우 **주재국 경찰** 등에 신고